

안전점검 통계분석 방법 개선

안전점검 통계분석의 방법이 1989년 4월 1일부터 일부 변경된다. 이번에 통계방법을 개정하게 된 것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통계분석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점검 실시후 통계작성에 필요한 소요시간을 절감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1. 통계분석의 필요성

통계란 “어떤 현상이나 자료를 수량적으로 정리 분석한 결과”를 말한다. 즉 안전점검 통계는 특수건물에 대한 점검결과를 수량적으로 객관화시켜 놓은 자료인 것이다.

안전점검이 중요하고 필요한 만큼 통계 또한 꼭 필요한 업무이다. 왜냐하면 안전점검이 특수건물이라는 나무 하나 하나를 가꾸는 작업이라면 통계는 숲 전체를 바라보고 관리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통계가 없다면 특수건물의 증가추세 및 대형·고층화 현상을 정확히 감지할 수 없어 대응방안이 늦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점검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방재시설이 개선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막연하게 추측할 수 밖에 없어 방재대책을 정확하게 수립할 수 없게 된다.

현장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보고서가 작성된다. 그러나 점검보고서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이관 또는 폐기하게 된다. 그리하여 점검후 수년이 지나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 그래서 통계가 필요하다. 점검한 결과를 수치적으로 정리하여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안전점검 통계의 필요성을 요약하면

- 특수건물의 규모 및 방재설비의 실태를 파악하여 점검업무 자료로 활용.
- 방재시설의 개선상황을 파악하여 안전점검의 효과를 측정.
-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수량적으로 정리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보존.
- 방재대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 등이다.

2. 현행 통계분석 방법

가. 점검부서에서 통계 양식을 작성한다. 전산시설이 있는 부서에서는 시설상황, 집계표 및 점검기록카드를 작성하고 전산시설이 없는 부서에서는 시설상황, 집계표 및 일반사항을 작성한다.

나. 위험관리부에서 작성된 통계 양식을 취합 정리한다.

다. 통계자료를 전산입력한다. 집계표와 일반사항은 전산실에서 점검기록카드는 점검부서에서 각각 입력한다.

라. 입력자료를 출력하여 위험관리부에서 종합 분석한다.

3. 개선 내용

전산부서 : 점검 1·2부, 부산, 대구, 인천지부

가. 안전점검결과 집계표(6-1-3)양식을 폐기한다.

나. 점검기록카드(5-11-1)작성과 전산입력은 현행과 같이 점검부서(또는 지부)에서 담당한다.

다. 시설상황(6-1-2)

- 작성방법은 현행과 같다.

· 1차년도('89회계년도)에는 현행과 같이 점검부서에서 작성하여 위험관리부로 통보한다. 전산실에서 시설상황을 물건별로 직접 전산입력한다.

- 2차년도('90회계년도)부터는 기존물건에 대한 시설상황을 작성하지 않고 1차년도에 입력된 통계자료를 안전점검시 출력하여 점검결과 변동된 통계항목만을 재작성하고 전산입력 자료를 수정한다. 단, 신규물건은 1차년도 방법과 같이 시설상황을 매년 작성하여 위험관리부로 통보, 전산입력토록 조치한다.

라. 전산입력자료를 출력하여 위험관리부에서 종합 분석한다.

비전산부서 : 대전, 광주, 전주 지부

가. 안전점검결과 집계표(6-1-3) 양식을 폐기한다.

나. 일반사항(6-1-1)과 시설상황(6-1-2)양식을 현행과 같이 매년 작성하여 위험관리부로 통보한다.

다. 전산실에서 시설상황을 물건별로 직접 전산입력하고 2차년도 이후에는 입력자료중 변동 항목을 수정한다.

4. 현행과 개선 방안과의 비교

구 분	현 행	개 선 안
통계양식작성 : 점검기록카드 시설상황 집계표	신규발생년도 작성, 이후 변동항목수정 매년반복작성 매년반복작성	현행과 동일 1차년도 : 작성 2차년도이후 : 변동항목 수정(신규물건은 작성) 폐기
취합 정리	전물건 매년 위험관리부	1차년도 : 전물건 위험관리부 2차년도이후 : 생략(신규물건 제외)
전 산 입 력 : 점검기록카드 시설상황	점검부서 매년집계표 입력(전산실)	현행과 동일 1차년도 : 물건별 입력(전산실) 2차년도이후 : 변동항목수정(신규물건은 입력)
종합 분석	위험관리부	현행과 동일

※ 비전산부서는 집계표 양식폐기, 시설 상황입력 및 수정방법만 상이하고 기타의 내용은 현행과 같이 시행한다.

5. 통계작성의 방법 및 유의사항

가. 작성 방법

(1) 지역별, 업종별, 월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연면적 100m² 이상 건물에 대하여 작성한다. 단, 변전실, 보일러실, 위험물창고 등 점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물은 100m² 미만도 작성토록 한다.

(3) 건물 단위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험물 등 옥외시설은 시설 단위별로 작성한다.

(4) 기재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양호 : G,

대상미설치 : O

대상불량 상, 중, 하 : A, B, C

비대상양호 : OG

비대상불량 상, 중, 하 : OA, OB, OC

(5) 다수동인 경우 “×동수”로 기재한다.

(6) 다음 시설은 대상불량인 경우에 불량내용을 기재한다.

화기시설, 가연성가스, 지하탱크, 옥내탱크, 옥외탱크, 전기시설, 방화구획(층·면), 방화구획(용도), 경계·간막이벽, 자탐설비,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소화기, 방화관리,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포말, 이산화탄소, 할론, 분말.

(7) 불량 상, 중, 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상 : 대체로 양호하여 경미한 보수(신설비의 25% 미만 정도)로 기준에 이를 수 있는 것

중 : 부분보수(신설비의 25% 이상 50% 미만 정도)로 기준에 이를 수 있는 것

하 : 시설의 효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으며 전면 개수를 요하는 것

나. 작성상의 유의사항

(1) 연소위험 항목은 연소위험이 있는 경우, 건물 단위별로 작성한다.

(2) 방화관리 항목은 소방법상의 방화관리자 선임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건물에 대한 방화관리의 실태를 점검건수와 일치되게 작성한다(불량내용 기재)

(3) 관계 법규에 의하여 완화 적용된 시설은 비대상으로 처리한다.

예 1) 6층 건물로서 5층 이상이 바닥면적 200m² 이내마다 구획된 경우 : 피난계단 비대상 처리

예 2) 옥내소화전 대상 건물에 스프링클러설비가 내무부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 :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설비 비대상 처리

(4) 관계 법규상 대상 시설이나 방재연구위원회에서 비대상으로 완화된 경우 : 비대상 처리

(5) 전기시설, 화기시설 등의 항목에서 다수동인 경우에 “×동수”를 누락시키지 않도록 한다.